

보험계약역모기지특약 II 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역모기지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 역모기지지급에 관한 사항

제4조 역모기지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5조 역모기지지급의 일시중지 및 지급재개에 관한 사항

제6조 역모기지지급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8조 회사의 보장개시

제9조 특약의 보험료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0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별표1> 역모기지지급액 기준표

보험계약역모기지특약 II 약관

※ 이 특약의 약관 본문 내에서 참조하는 모든 법령은 별첨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계약자로 하여금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역모기지지급액의 지급(이하 ‘역모기지지급’이라 합니다)을 신청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 원, 연간 10%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 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 년차 이자 = 100 원(원금) X 10%=10 원
- 2 년차 이자 = (100 원(원금) + 10 원(1 년차 이자)) X 10%=11 원
- 2 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 원+11 원=21 원

- 나. 역모기지지급형태: 종신행, 20 년형, 10 년형으로 나누어지며, 계약자가 역모기지지급을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 역모기지지급기간: 역모기지 지급개시일로부터 역모기지지급형태에 따라 아래기간을 말합니다.
단, 역모기지지급기간 동안 확정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제 6 조 [역모기지지급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사유로 역모기지지급이 종료될 때에는 그 기간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역모기지지급형태	종신행	20 년형	10 년형
역모기지지급기간	종신	20 년	10 년

라. 역모기지지급액: 계약자가 역모기지지급을 신청한 경우 역모기지지급기간 동안 매 보험연도 연계약 해당일마다 지급하는 금액으로 “역모기지지급액 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연액의 지급주기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1 개월, 3 개월 또는 6 개월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역모기지지급액(지급연액) 예시】

종신형,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 천만원, 역모기지지급개시 시점의 주계약 사망보험금 1 억원, 남자

• 65 세 역모기지지급개시: $100,000,000 \text{ 원} \times 2.485\% = 2,485,000 \text{ 원}$

• 75 세 역모기지지급개시: $100,000,000 \text{ 원} \times 4.182\% = 4,182,000 \text{ 원}$

마. 역모기지원리금: 역모기지지급개시 이후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매 지급시점 계약자에게 지급한 역모기지지급액을 이 특약의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한 금액들의 합으로 합니다. 다만, 제 3 조 [역모기지지급에 관한 사항] 제 2 항에 따라 계약자가 역모기지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다. 역모기지지급기간”이 종료 된 후에도 역모기지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역모기지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하여 부리 됩니다.

【역모기지원리금 예시】

65 세 역모기지지급개시, 주계약 사망보험금 1 억원, 남자, 역모기지원리금 적용이율 2.2% 가정시
(단위: 천원)

경과 년수	종신형		20 년형	
	역모기지지급액(연액)	역모기지원리금	역모기지지급액(연액)	역모기지원리금
1	2,485	2,540	3,513	3,590
3	2,485	7,788	3,513	11,010
5	2,485	13,270	3,513	18,759
7	2,485	18,995	3,513	26,853
10	2,485	28,064	3,513	39,674
15	2,485	44,560	3,513	62,993
20	2,485	62,951	3,513	88,993
25	2,485	83,457	-	99,223
30	2,485	106,320	-	110,628
35	2,485	131,810	-	123,344
40	2,485	160,231	-	137,523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나. 연계약해당일: 이 특약의 역모기지지급 개시일로부터 일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 2 관 역모기지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 [역모기지지급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역모기지지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언제든지 역모기지원리금의 부분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 2 항에 따라 역모기지원리금의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주계약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주계약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금에서 이 특약의 역모기지원리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므로 주계약 지급금이 감소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금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④ 역모기지원리금 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⑤ 회사는 이 특약을 부가한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금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체납처분 압류통지나 질권설정 등 지급제한 또는 처분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역모기지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⑥ 계약자는 역모기지지급기간 동안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⑦ 계약자는 역모기지지급기간 동안 주계약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⑧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역모기지지급에 관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⑨ 역모기지지급기간 중 감액 이외의 사유로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지급하는 역모기지지급액은 변경된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 [역모기지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신청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모기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급개시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역모기지지급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역모기지지급형태	종신형	20 년형	10 년형
피보험자나이	60 세 ~ 85 세	50 세 ~ 85 세	50 세 ~ 85 세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역모기지지급형태 및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아래 기간이 경과한 경우

구분		역모기지지급형태		
		종신형	20 년형	10 년형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5 년납 초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5 년납 이하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5 년	
	일시납	주계약의 보험계약일 + 5 년		

3.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
 4. 이 특약을 부가한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금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체납처분 압류통지나 질권설정 등 지급제한 또는 처분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5.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② 계약자는 역모기지지급을 신청할 때 종신형, 20 년형 또는 10 년형 중 최대 2 종류의 역모기지지급형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역모기지지급형태별 구성비율은 10%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구성비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나누어서 계산한 역모기지지급액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단, 역모기지지급기간 중에는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역모기지지급형태 복수 선택 예시】

65 세 역모기지지급개시, 주계약 사망보험금 1 억원, 남자, 역모기지원리금 적용이율 2.2%,
역모기지지급형태 구성비율 종신형 40% , 20 년형 60% 가정시

(단위: 천원)

경과 년수	종신형		20 년형		합계	
	역모기지지급액 (연액)	역모기지원리금	역모기지지급액 (연액)	역모기지원리금	역모기지지급액 (연액)	역모기지원리금
1	994	1,016	2,108	2,154	3,102	3,170
3	994	3,115	2,108	6,606	3,102	9,721
5	994	5,308	2,108	11,255	3,102	16,563
7	994	7,598	2,108	16,112	3,102	23,710
10	994	11,226	2,108	23,804	3,102	35,030
15	994	17,824	2,108	37,796	3,102	55,620
20	994	25,181	2,108	53,396	3,102	78,577
25	994	33,383	-	59,534	994	92,917
30	994	42,528	-	66,377	994	108,905
35	994	52,724	-	74,007	994	126,731
40	994	64,092	-	82,514	994	146,606

- ③ 계약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역모기지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역모기지지급 신청서(회사양식)
 2.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 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기타 계약자가 역모기지지급 신청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④ 계약자는 역모기지지급기간 동안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역모기지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 1 회 역모기지지급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역모기지지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는 역모기지원리금 및 역모기지지급을 위해 회사가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역모기지지급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제 9 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⑥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을 감액완납보험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역모기지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액완납보험】

감액완납보험은 장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동일한 보험기간의 일시납 보험으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연장정기보험】

연장정기보험은 장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당초 주계약의 보험금액과 동일한 일시납 정기보험으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제5조 [역모기지지급의 일시중지 및 지급재개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역모기지지급기간 동안 역모기지지급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일시중지 신청일 이후 역모기지지급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역모기지지급이 일시중지 된 기간 동안에도 일시중지 직전의 역모기지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하여 부리 됩니다.
- ② 계약자는 역모기지지급 일시중지 신청일 이후 역모기지지급재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재개 신청일 이후 회사는 역모기지지급을 재개합니다. 이 때, 역모기지지급액의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일시중지 이전과 동일합니다.

- ③ 제 4 조 [역모기지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 2 항에 따라 2 종류의 역모기지지급형태를 동시에 선택하고 이후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따른 일시중지 및 지급재개를 신청한 경우, 일시중지 및 지급재개는 2 종류의 역모기지지급형태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제6조 [역모기지지급의 종료에 관한 사항]

- ① 이 특약의 역모기지지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역모기지지급은 종료됩니다.
1. 계약자가 역모기지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2.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등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4. 역모기지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 ② 계약자가 역모기지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역모기지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역모기지지급액은 역모기지지급형태 및 지급개시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새로이 정합니다.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解止),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단, 주계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제8조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 3 조 [역모기지지급에 관한 사항] 제 1 항에서 정한 역모기지지급개시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10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1> 역모기지지급액 기준표

역모기지지급액은 역모기지지급형태, 성별 및 피보험자의 지급개시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개시나이	역모기지지급형태					
	종신행		20 년형		10 년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 세	-		2.590%	2.480%	4.674%	4.475%
51 세			2.647%	2.480%	4.777%	4.475%
52 세			2.705%	2.534%	4.882%	4.573%
53 세			2.765%	2.590%	4.989%	4.674%
54 세			2.826%	2.647%	5.099%	4.777%
55 세			2.888%	2.705%	5.211%	4.882%
56 세			2.951%	2.765%	5.326%	4.989%
57 세			3.016%	2.826%	5.443%	5.099%
58 세			3.083%	2.888%	5.563%	5.211%
59 세			3.150%	2.951%	5.685%	5.326%
60 세	2.019%	1.752%	3.220%	3.016%	5.810%	5.443%
61 세	2.121%	1.835%	3.291%	3.083%	5.938%	5.563%
62 세	2.121%	1.923%	3.291%	3.150%	5.938%	5.685%
63 세	2.233%	2.019%	3.363%	3.220%	6.069%	5.810%
64 세	2.353%	2.121%	3.437%	3.291%	6.202%	5.938%
65 세	2.485%	2.233%	3.513%	3.363%	6.339%	6.069%
66 세	2.629%	2.353%	3.590%	3.437%	6.478%	6.202%
67 세	2.786%	2.485%	3.669%	3.513%	6.621%	6.339%
68 세	2.960%	2.485%	3.750%	3.513%	6.766%	6.339%
69 세	2.960%	2.629%	3.750%	3.590%	6.766%	6.478%
70 세	3.152%	2.786%	3.750%	3.669%	6.915%	6.621%
71 세	3.366%	2.960%	3.750%	3.750%	7.067%	6.766%

개시나이	역모기지지급형태					
	종신형		20 년형		10 년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72 세	3.606%	3.152%	3.846%	3.750%	7.223%	6.915%
73 세	3.876%	3.366%	4.134%	3.750%	7.382%	7.067%
74 세	3.876%	3.606%	4.134%	3.846%	7.382%	7.223%
75 세	4.182%	3.876%	4.461%	4.134%	7.544%	7.382%
76 세	4.532%	3.876%	4.835%	4.134%	7.710%	7.382%
77 세	4.532%	4.182%	4.835%	4.461%	7.710%	7.544%
78 세	4.937%	4.532%	5.266%	4.835%	7.880%	7.710%
79 세	5.410%	4.937%	5.771%	5.266%	8.053%	7.880%
80 세	5.410%	4.937%	5.771%	5.266%	8.053%	7.880%
81 세	5.969%	5.410%	6.367%	5.771%	8.230%	8.053%
82 세	5.969%	5.969%	6.367%	6.367%	8.230%	8.230%
83 세	6.640%	5.969%	7.083%	6.367%	8.411%	8.230%
84 세	6.640%	6.640%	7.083%	7.083%	8.411%	8.411%
85 세	7.462%	6.640%	7.959%	7.083%	8.411%	8.411%

- (주 1) 역모기지지급액은 역모기지지급기간 동안 매 보험연도 연계약해당일마다 지급되는 금액으로 역모기지지급형태, 성별과 피보험자의 지급개시나이에 따른 지급연액 지급률을 역모기지지급개시일의 주계약 사망보험금(다만, 제 4 조 [역모기지지급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 2 항에 따라 2 종류의 역모기지지급형태를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계약 사망보험금에 각 역모기지지급형태별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된 지급연액을 말합니다.
- (주 2) (주 1)에도 불구하고 역모기지지급기간 중 감액 이외의 사유로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지급하는 역모기지지급액은 변경된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주 3) 단,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 1)에서 정한 지급연액의 지급주기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1 개월, 3 개월 또는 6 개월로 변경하여 역모기지지급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